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교보에이아이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yobo AIM 1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Company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의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의 지점, 영업소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원 및 상근임원의 채용여부) 이 회사는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위 신문에 광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다른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200,0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액면가)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가는 금 오천원(5,000원)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육만주(60,000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본 정관에 따라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갖는 종류주식인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및 제3종 종류주식과,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제4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이하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오백만주(5,000,000주)로 하고, 제2종 종류주식(이하 "제2종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오천만주(50,000,000주)로 하며, 제3종 종류주식(이하 "제3종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사천만주(40,000,000주)로 하고, 제4종 종류주식(이하 "제4종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오백만주(5,000,000주)로 하며, 보통주식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일억주(100,000,000주)로 한다.
- ②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2.05%(1년으로 환산할 경우 4.10%)로 하고, 제2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은 (i)제10기까지는 사업연도별로 3.25%(1년으로 환산할 경우 6.50%)로 하며, (ii)제11기 이후에는 사업연도별로 **4.00%**(1년으로 환산할 경우 **8.00%**)로 한다. 제3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3.25%**(1년으로 환산할 경우 **6.50%**)로 하고, 제4종 종류주식은 별도의 우선배당 없이 보통주식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하되,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 및 최종 사업연도의 제1종 내지 제3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은 (제15조 배당기산일로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기간/365)X

배당률X2로 산출한다.

- ③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하 “보유자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1.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제2항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최우선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의한 배당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제2항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3종 종류주식, 제4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3. 제2호에 의한 배당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제2항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4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4. 본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배당을 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제4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④ 이 회사는 보유자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는 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1.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상법 제46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제2항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최우선하여 배당한다.
 2. 본항 제1호에 의한 배당을 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 중 30%는 제3종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나머지 70%는 제4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에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⑤ 청산 등의 사유로 이 회사가 잔여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은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전 잔여재산분배시 본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부만 충족되고 종료되었다면, 이후 추가 잔여재산 분배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제2호 나머지를 전부 충족시키고 제3호 및 제4호의 순서로 분배를 진행함)

1.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한다.
 2. 운영기간 중에 제3종 종류주식에 관한 제2항의 배당률에 따라 누적적으로 배당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위 미배당분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3. 제4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한다.
 4. 제3호까지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30%는 제3종 종류주식에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제4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⑥ 제1항의 종류주식 중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및 제3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제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⑦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의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경우 모두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11조(현물출자)

- ① 이 회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국토교통부 등록 후 상법 제416조 제4호에 따라 이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 및 재산의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다만, 보유 자산의 매각이 존립 기간 내에 불가능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1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경우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매수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산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상장 등)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 발행계획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

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6조 제1항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8.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최초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배당기산일을 주금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제16조(명의개서 등) 명의개서 등 주식에 관한 업무는 이 회사가 위탁한 일반사무수탁회사에서 수행한다. 단,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 중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제2항의 경우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채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9조를 따른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제21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 정관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본 정관 제13조에 의하여株式이 상장된 이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株式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株式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머니투데이와 본 정관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다른 공고매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 정관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株式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발행株式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1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승인에 의해 채택된다.
 - 1. 당해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확정. 다만, 사업계획의 확정 은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각 단위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는다.
 - 2. 당해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단,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하기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은 본조 제3항에 의함)
 - 5. 배당에 관한 사항
 -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7.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
 - 1. 회사의 정관의 변경(단, 본조 제3항 제3호 이외의 경우에 한함)
 - 2. 액면가 미만으로 주식발행
 - 3.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 증액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4. 회사의 자본감소
 5. 사후설립
 6. 존립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회사의 해산
 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8.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9. 회사의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단,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본조 제3항에 의함)
 10.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의 전부의 양수
 11.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12.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13. 회사의 존립기간의 변경
 1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및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대상·범위 등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6. 기타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
1. 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명확히 하면, 회사의 기존 자산관리 회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변경, 해지하거나 신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함)
 2.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정관의 변경(단, 제10조의 내용 및/또는 본 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변경,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④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연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서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하며, 제

3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도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하게 본 조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식의 주주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감사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 및 감사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결격 사유) 이사 및 감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동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3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 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감사나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제38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행위준칙) 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

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이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행위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6.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시공자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7.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판매회사와의 주식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경우, 또는 신주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거래
14. 자산운용관리지침의 변경 및 자산운용관리세부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15.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 별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설립 후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6장 업 무

제46조(자산운용의 기본방침 및 내부통제기준)

- ① 이 회사는 이 정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유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다.
 - 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 2. 증권에 대한 투자의 경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다.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라.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함)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바. 기타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위 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증권에 대한 투자의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다만, 위 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총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회사는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관리지침에서 정하도록 한다.
- ③ 이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 ① 이 회사는 보유자산의 투자, 운용, 보관, 일반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관련 수탁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② 각 수탁회사와 체결할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자산관리 위탁계약
- 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인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한다.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할 자산관리위탁계약의 개요

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 운용한다는 내용

나. 자산투자, 운용규모 및 그 대상 등 제반 투자, 운용조건에 관한 내용
다. 연간 지급할 수수료 및 계약기간, 수수료는 자본재조정수수료, 매입수수료, 운용기본수수료,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라. 자산관리회사가 운용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마. 관련 인허가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과 관련된 업무

2. 자산보관 위탁계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자산의 보관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선정한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기로 하되, 주주총회를 통해 계약의 변경체결 등을 할 수 있다.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자산보관기관이 자산운용에 따라 이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나. 연간 지급할 수수료 및 계약기간

다. 자산보관기관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3. 일반사무 위탁계약

회사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일반사무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회사가 선정한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되, 이사회를 통해 계약의 변경체결 등을 할 수 있다.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이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이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세무·계산에 관한 사무,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에 의한 회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공시 업무 등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나. 연간 지급할 수수료 및 계약기간

다. 사무수탁회사가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4. 주식판매 위탁계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식발행 및 판매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회사가 선정한 판매회사에 위탁하기로 한다. 판매회사와 체결할 주식판매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나. 지급할 수수료 및 계약기간

다. 판매회사가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체결 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거래의 제한)

- ①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 이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에 따라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이사회에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및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이 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 등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회사(의결권 행사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이 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한 자가 그 보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당해 보유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 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제50조(주식 소각) 이 회사는 상법상 자본금 감소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여유자금의 운용계획) 이 회사는 여유자금을 자산운용관리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기로 한다.

제7장 회 계

제52조(사업연도)

- ①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0월 1일 개시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하고, 4월 1일에 개시하여 9월 30일에 종료한다.
- ② 최초의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최종의 결산기는 이 회사의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53조 (회계처리)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투자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

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의거 매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자산의 평가) 이 회사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2.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는 원금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4. 기타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이익배당)

- ① 이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 ② 이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매사업연도별 초과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의 100% 전액을 배당하며, 필요시 이사회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이 정관 제52조(사업연도)에서 정한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는 날로부

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합병 및 해산

제59조(합병)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60조(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 1.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2. 합병
- 3. 파산
-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5. 등록의 취소

제9장 보 칙

제61조(투자자의 보호)

- ① 이 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을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2조(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1차 개정 정관은 2021.07.15.일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2차 개정 정관은 2025. 8. 27.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승인되는 즉시 시행한다. 단, 제1조, 제10조, 제30조, 제47조,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25. 8. 27.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가 적법, 유효하게 발행되고 해당 신주 외에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이 소각 완료되어 그에 따른 감자대가가 모두 지급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8월 27일

주식회사 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삼성동, 골든타워)
대표이사 손 백 승 (인)